

2001년 대학교수해외파견연구지원

공 모 요 강

2000. 11.

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

(국 제 교 류 지 원 팀)

2001년 교수해외파견 연구지원 공모요강

1. 목 적

- 교수의 연구 및 교육능력 함양
- 해외학문 및 연구방법 접목
- 연구 및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인적교류 촉진과 대학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

2. 기본방침

- 6개월 연구파견 확대 (선정비율 15%이상 유지)
 - 파견예정인원을 확정하여 1년 파견자와는 별도로 심사
 - 미국파견 집중현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미국이외의 파견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편중을 해소
 -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파견을 희망하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선정율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음
 - 학술활동의 수월성에 의거 파견자를 선정
 - 다단계 심사절차에 의하여 선정
 -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의 선도연구자 지원자격 기준을 적용
 - 인문·사회계열(예술·체육분야 포함) : '96. 1. 1 ~ 2000. 12. 31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
 - 자연계열 : '96. 1. 1 ~ 2000. 12. 31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,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(등록 완료된 국제 특허포함)등의 연구 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
- 단.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(등록 완료된 국제 특허 포함)이 반드시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 요망(재단 홈페이지의 참여광장 →제안코너 이용)
- ※신청마감 이후 2000. 12. 31 이내에 게재 예정인 논문은 게재예정 증명서 첨부 후 별쇄본 제출

☞ 2002년부터 인문·사회계열은 학술진흥재단 전국 규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자연계열은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3편이상 포함하도록 상향조정할 예정임.

* 단, 예술 및 체육분야는 실기와 관련된 실적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.

3. 사업내용

- 예산 : 2,550,000천원 내외
- 파견인원 : 110명 내외
- 파견기간 : 6개월 또는 1년
- 지원분야 : 전학문분야

학문발전을 위해 국외에서 연구수행이 필요한 분야와, 연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분야 지원

○경비지원

지원내역 및 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료 : 정부예산 편성기준 국외항공요금(왕복) 적용 ○ 준비금 : US\$500 ○ 체재비 : 공무원 특별훈련비 지급기준 적용
지원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년 파견자에 한하여 2회로 나누어 파견자 소속대학의 연구비 증양관리구좌로 송금함

4. 공모 및 신청

가. 공모

- 대학(교)의 총(학)장에게 공문 발송을 통하여 공고
-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공고

나. 신청방법

-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술연구자 정보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<대학교수해외파견지원사업>에 신청 (On-Line 과제신청)
 - * 연구실적은 재단의 학술 연구자 정보DB를 활용하며, 지원신청자는 본인 정보를 직접 입력,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.
- 지원신청서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토록 하고, 연구계획서는 동 사업의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(반드시 On-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함) 소속대학의 총(학)장이 수합하여 일괄 신청함.

- 대학 총(학)장은 우수한 교수를 선발하여 별첨서식에 의거 일괄 추천하
되 해외에서의 연구수행이란 점을 감안하여 추천함
- 소속대학 총(학)장의 추천이 없는 경우 온라인신청은 자동 취소됨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: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해 직접 작성
- 연구계획서 : 4부(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소속대학 총(학)장을 통해 일괄 제출)
- ※ 기타 연구계획관련 교환서신(e-mail 교환서신도 가능) 일체 첨부

- * 추천조건 : 파견자로 선정되어 6개월 이상 출국하는 연구자는 “파견
근무”로 처리하여야 함
- * 신청절차 : 연구계획수립 및 파견예정기관과 협의 → 초청장 입수 → 총
(학)장 추천

다. 신청기간

- 온라인신청기간 : 2000. 12. 8(금) ~ 12. 22(금) 20:00까지
- 연구계획서 접수기간 : 2000. 12. 27(수)까지

라. 신청자격

-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간 해외 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마. 신청제한

-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연구비가 회
수된 날로부터 법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-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 받고 소정기한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
하지 않은 사람
- 연구결과 평가에서 하위의 등급 (C, D급)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또는 공
동연구원으로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
5. 심사 및 선정

가. 심사절차

- 요건심사 :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
- 전공심사 : 연구계획서 내용에 의한 전공심사 (패널심사)
- 종합심사 : 전공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, 학문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
여 최종 선정

나, 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	비고
1. 연구의 필요성, 타당성	국·내외 연구 동향과 비교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가 외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당위성	100	
2. 연구계획(방법)의 논리성	연구의 목적과 내용, 연구방법간의 연계성, 논리성, 구체성	100	
3.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	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및 신청과제의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	200	
4. 연구후 활용정도 및 학문발전에의 기여도	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의 정도	100	
계		500	

다. 선정취소

- 선정자중 징계의결 요구, 징계처분 (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해당자) 중에 있는 사람
- 징계처분이 종료된 자로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(견책 6월, 감봉 12월, 정직 18월)
-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

6. 관리운영

- 출국 : 선정 통보일로부터 2001년 말까지 출국을 원칙으로 함.(단, 2001년 1월 이후에 출국한 경우 소급지원 가능)
- 일시귀국 :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자 부담으로 함.
 - 일시귀국 및 조기귀국 허용기간 : 연간 20일. 단, 파견기간 종료 후 연속적으로 현지에서 체류하고 입국한 경우 당초 파견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4주 범위내에서 초과일수를 감함
 -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일시귀국한 경우 국내체류 중에 소속 대학을 경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 (일시귀국일수에 포함하지 않음)
- 지급경비 회수
 - 일할 반납조치 : 일시귀국 및 조기귀국 일수가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반납토록 함

- 전액회수 :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파견목적
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액 회수함.

○ 연구계획 변경

- 연구계획의 내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. 단, 당초의 연구계획서와
동일하나 연구수행 도중 불가피한 과제명 변경은 연구자의 변경요청이
있을시 재단의 승인에 의거 인정.

○ 보고서 제출 : 모든 보고서는 국내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제출함

- 체재지 도착보고서 : 연수국 도착 즉시
- 중간보고서 : 출국후 5개월 경과시
- 귀국보고서 : 귀국후 1개월 이내
- 연수결과보고서 : 연수결과는 연구논문으로 작성하여 연수종료후 6개월이
내에 제출

《제출자료》

- 연구결과논문 (학회지 투고접수증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사본 첨부)
- 연구결과 개요보고서
- 논문초록

※ 위의 자료는 E-mail(result@ms.krf.or.kr) 또는 디스켓(한글버전
3.0 이상, MS 워드로 작성)으로 제출하여야 함.

《연구결과 논문의 학술지 게재 의무화》

- 연구결과 논문은 연수종료후 6개월 이내에 현지국의 권위있는 학
술지 또는 국외의 전문학술지에 투고하여야 하고, 연수종료후 2년
이내 게재(또는 학회지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)하여야 함.
연구결과 논문을 해당 전문학술지에 게재·발표하였을 경우에는
그 결과를 추가로 보고하여야 함.
- 연구결과 논문을 현지국의 권위있는 학술지 또는 국외의 전문학술
지에 연수종료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하지 않을 경우는 재단의 전
연구비 지원사업에 신청이 제한되며, 연수종료후 1년이내에도 투고
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수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, 환수 통고후 5년
간 재단의 전 연구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함.
- 연구결과 논문을 투고하였으나 연수종료후 2년 이내에 현지국의
권위있는 학술지 또는 국외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을 경우는
재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며, 평가결과 C등
급은 결과통보 이후 3년간, D등급은 5년간 교육부 및 재단이 실시
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함.

- * 예술·체육의 실기관련분야는 연구기간 또는 연구종료후 6개월 이내에 파견국가에서의 전시회·연주회 등의 실기 업적물(관련 증빙 자료 첨부)로 결과보고를 대체할 수 있음
- 연구결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함.
 - ※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수혜기관의 일부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.
- <국문표기> “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 (KRF-2001-013-○○○○○)”
- <영문표기> “The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(KRF-2001-013-○○○○○)”

7. 추진일정

- 사업계획 수립 : 2000. 11. 6
- 공모 및 신청 접수 : 2000. 11. 7 ~ 2000. 12. 27
- 신청 접수보고 및 심사 : 2001. 1. 5 ~ 1. 20
- 파견후보자 선정 : 2001. 1월 말경
- 출국 : 선정통보일로 부터 ~ 2001. 12월말까지